

2018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주요업무보고



2018. 11.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일반 현황

설립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교육감이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

학교안전공제회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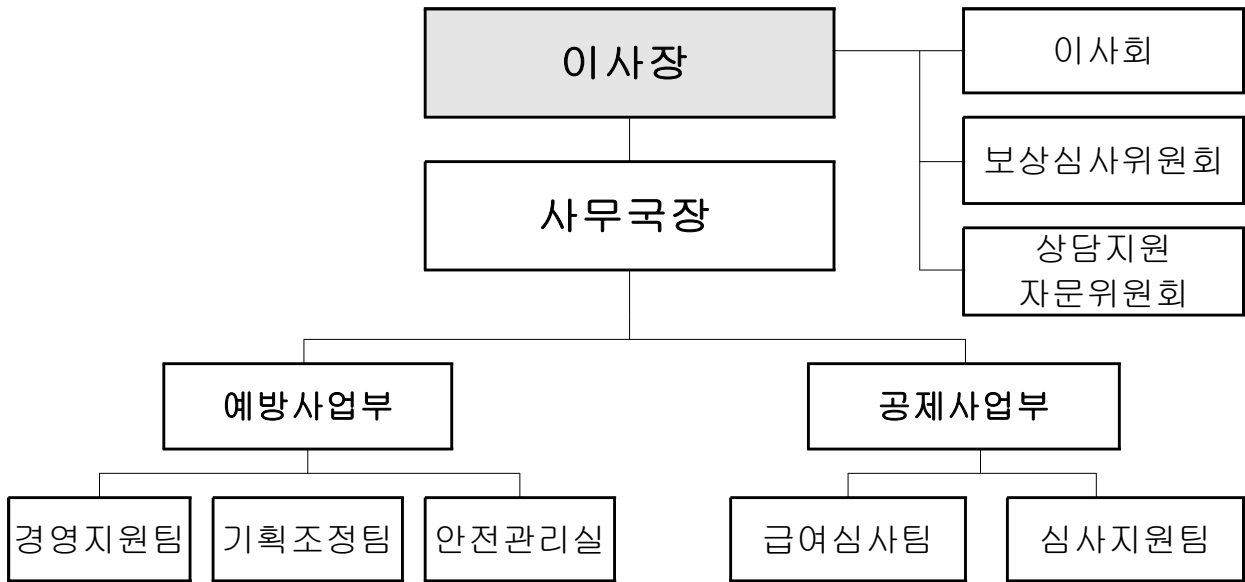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통한 피공제자 보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수립을 통한 체계적·효율적인 안전관리 운영시스템 마련
-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피해의 신속·적정한 보상·지원을 통한 학교안전망구축
- 피공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

연혁

- '87. 12. 09.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설립
- '88. 03. 01. 보상업무 개시
- '07. 09. 0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 '07. 09. 03.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설립등기
- '12. 04. 01. 학교폭력피해 지원 개시
- '15. 01. 20.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제도 신설
- '16. 09. 01. 여행자공제사업 개시

□ 조직 및 정·현원

○ 2부 4팀 1실



○ 정·현원

- 특정직 및 일반직

(단위: 명)

구분	특정직	일반직				계
	3급	5급	6~7급	8~9급	소계	
정원	1	2	5	7	14	15
현원	1	1	5	8	14	15

- 계약직

(단위: 명)

구분	실장	과장	팀장	대리	주임	사원	계
정원	1	4	5	5	6	2	23
현원	1	3	4	5	4	0	17

□ 시설 현황

○ 소재지: 영등포구 양산로 107 3층, 7층

○ 건물: 543m²

임원 현황

- 이사장: 김형태 (교육을 바꾸는 새힘 대표, 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
- 임 기: 3년 ('16.9.1. ~ '19.8.31.)
-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장	학부모	교수	공무원	변호사	전문의	회계사	기타	계
이사	8	2	1	1	1	1	-	1	15
감사	-	-	-	1	-	-	1	-	2
계	8	2	1	2	1	1	1	1	17

보상심사위원 현황

- 위원장: 조성남 (교육재정과장)
- 임 기: 2년 ('17.9.19. ~ '19.9.18.)
-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학교장	학부모	교수	공무원	변호사	전문의	보험 전문가	계
인원	3	2	1	2	2	2	3	15

상담지원자문위원 현황

- 위원장: 이영식 (중앙대학교병원 전문의)
- 임 기: 2년 ('16.9.26. ~ '18.9.25.)
-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전문의	변호사	상담 전문가	교수	공무원	학부모	계
인원	2	1	1	1	1	1	7

□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현황

(단위: 교, '18.10.10. 현재)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시설	외국인교	기타학교	합계
가입대상교	856	596	384	320	30	13	2	29	2,230
가입교	836	596	384	320	30	13	2	29	2,210
미가입교	20	-	-	-	-	-	-	-	20

□ 공제급여 지급 현황

○ 연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교육	외국인	기타	계	전년대비증감율	
2012	건수	640	3,780	3,632	2,850	67	32	10	18	11,029	-
	금액	59,232	1,159,762	1,750,903	1,406,222	45,959	14,344	857	3,926	4,441,205	-
2013	건수	725	3,774	3,865	2,917	65	35	14	32	11,427	3.6%
	금액	67,035	1,077,019	2,352,165	2,426,103	26,281	134,274	7,998	13,471	6,104,346	37.4%
2014	건수	1,026	4,347	4,506	3,437	124	25	16	20	13,501	18.1%
	금액	100,143	1,683,590	1,917,063	2,841,416	37,738	29,853	8,506	6,135	6,624,444	8.5%
2015	건수	1,080	4,305	4,339	3,577	95	27	8	27	13,458	△0.3%
	금액	99,278	945,155	1,871,357	1,751,840	23,375	11,672	1,234	8,830	4,712,741	△28.9%
2016	건수	997	4,378	3,919	3,360	80	22	8	19	12,783	△5.0%
	금액	352,159	1,405,546	1,362,424	1,646,869	19,283	5,742	1,008	9,036	4,802,067	1.9%
2017	건수	1,008	4,319	3,948	3,175	72	28	11	24	12,585	△1.5%
	금액	224,293	1,265,548	1,383,804	2,346,297	73,431	41,403	3,165	6,260	5,344,201	11%
2018	건수	662	3,185	2,641	2,297	64	21	5	13	8,888	
	금액	107,354	659,623	1,442,939	2,213,734	13,290	10,279	621	2,379	4,450,219	

※2018년도 10월 10일 기준

○ 2018년도 공제급여 지급 세부 현황

- 총괄 현황

구분	2018년(1.1.~10.10.)	2017년(1.1.~10.10.)	비 고
건수	8,888건	9,096건	208건(2.3%) 감소
금액	44억 5천만원	34억 3천만원	10억2천만원(29.7%) 증가

- 시간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 18.1.1.~10.10.)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체육수업	80	837	987	902	12	-	1	4	2,823
실험실습	-	12	16	41	1	-	-	-	70
교과수업	272	281	165	88	21	1	1	-	829
청소시간	2	13	15	9	-	-	-	-	39
휴식시간	91	1,278	875	522	12	7	2	5	2,792
방과후시간	160	471	465	598	10	7	1	4	1,716
기 타	57	293	118	137	8	6	-	-	619
계	662	3,185	2,641	2,297	64	21	5	13	8,888

- 장소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 18.1.1.~10.10.)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교 실	353	752	353	248	30	3	2	1	1,742
운동장	78	865	1,073	1,088	7	2	1	3	3,117
체육관	73	611	600	507	8	-	2	3	1,804
계 단	29	307	167	137	2	6	-	2	650
복 도	64	442	246	108	6	6	-	2	874
기 타	65	208	202	209	11	4	-	2	701
계	662	3,185	2,641	2,297	64	21	5	13	8,888

- 유형별 공제급여 지급 현황

(단위: 건, ' 18.1.1.~10.10.)

구 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평생학교	외국인	기타학교	계
사 망	-	-	-	-	-	-	-	-	-
장 해	1	1	8	26	-	-	-	-	36
골 절	60	728	642	462	15	11	1	4	1,923
열 상	322	754	380	353	22	6	3	-	1,840
관절염좌	77	512	485	693	5	1	-	6	1,779
기 타	202	1,190	1,126	763	22	3	1	3	3,310
계	662	3,185	2,641	2,297	64	21	5	13	8,888

□ 예산현황

(단위: 천원, '18.10.10. 현재)

세 부 사 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D=C/B)
	본예산(A)	예산현액(B)			
공제급여	5,883,000	5,883,000	5,617,000	4,450,219	75.6
소송 및 의료자문료	145,800	145,800	145,800	129,342	88.7
보상심사위원회	30,400	30,400	30,400	20,860	68.6
예방사업비	678,000	678,000	207,800	91,174	13.4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비	160,020	160,020	167,580	4,150	2.6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20,460	120,460	74,458	61.8
급여	884,029	884,029	789,733	448,810	50.8
수당	187,196	187,196	139,736	126,517	67.6
업무추진비	33,600	33,600	30,000	27,232	81.0
일반운영비	441,979	441,979	365,807	259,514	58.7
차기이월금	7,456,225	7,456,225	10,185,342	10,810,021	145.0
계	16,020,709	16,020,709	17,799,658	16,442,297	102.6



미션

서울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

비전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교
안전망 구축

신속·적정
보상체계 구축

교직원 안전망
구축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강화

중점과제

- 공제급여 지급
- 소송 및 의료자문
-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 여행자공제 사업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 학교폭력피해지원



주요업무 내역



(단위: 천원, '18.10.10.현재)

주요업무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D=C/B)	쪽수
	본예산 (A)	예산현액 (B)				
공제급여 지급	5,883,000	5,883,000	5,617,000	4,450,219	75.6	9
소송 및 의료자문	145,800	145,800	145,800	129,342	88.7	11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30,400	30,400	30,400	20,860	68.6	13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143,000	143,000	107,500	71,674	50.1	15
여행자공제사업	5,000	5,000	5,000	1,513	30.3	17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	160,020	160,020	167,580	4,150	2.6	19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20,460	120,460	74,458	61.8	21

1 공제급여 지급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지원범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

- 의무가입자: 유·초·중·고등학교의 장, 평생교육시설의 장
- 임의가입자: 외국인학교의 장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요양급여	연중	12,300건
장해급여		17건
간병급여		2건
유족급여		2건
위로금		1건

추진 실적

- 요양급여 : 8,852건, 2,530,191천원 지급
- 장해급여 : 36건, 1,920,028천원 지급

향후 추진 일정

- ' 18.10~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2019년 요양급여 보상범위 확대하여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상체계 구현 예정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10.10.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공제급여 지급	5,883,000	5,883,000	5,617,000	4,450,219	4,450,219	75.6	75.6
계	5,883,000	5,883,000	5,617,000	4,450,219	4,450,219	75.6	75.6

2 소송 및 의료자문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교직원과 교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함
- 학교안전공제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7조(비용의 보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지원대상: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명예학교안전요원,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
- 지원범위: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손해방지경감비용, 변호사선임료	연중	매월 5건
송무활동비		매월 10건
공제급여관련 법률, 의료, 손해사정자문 등		매월 5건

추진 실적

- 손해방지경감비용, 변호사선임료 등 : 26건, 112,182천원 지급
- 송무활동비 : 22건, 1,320천원 지급
- 공제급여관련 법률, 의료, 손해사정자문 등 : 51건, 15,840천원 지급

향후 추진 일정

- ' 18.10~12월: 학교안전사고 및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학교안전법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 예정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10.10.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소송 및 의료자문	145,800	145,800	145,800	129,342	129,342	88.7	88.7
계	145,800	145,800	145,800	129,342	129,342	88.7	88.7

3 보상심사위원회 운영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공제회의 공제급여 결정이 불복이 있는 자의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한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운영 및 이에 관련 된 업무를 통하여 피공제자 및 청구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8조(보상심사위원회)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	연중	8회 개최

추진 실적

○ 보상심사위원회 개최 : 총 6회

- 총 6회의 보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69건의 심사청구 처리
- 보상심사위원회 회의 결정 기간 준수

: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향후 추진 일정

- ' 18.8~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10.10.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보상심사위원회	30,400	30,400	30,400	20,860	20,860	68.6	68.6
계	30,400	30,400	30,400	20,860	20,860	68.6	68.6

4

공제회 홍보 및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학교안전공제회 사업 및 기관을 홍보함으로써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설립 취지를 알리고 제도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피공제자의 권익보호를 실현함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 실현 가능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대상: 각급 학교, 학부모, 교육청 등 교육기관 및 교육계 언론사
- 방법: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게재, 홍보물 배포, 각종 자격·직무·교장단·행정실장 연수 시 공제제도 및 사업 홍보,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제작·배송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교육언론사 지면 광고 의뢰	연중	4회
홍보 물품 제작 계획 수립 및 실행	"	수회
학교안전공제제도 책자 배포	3월	18만부

□ 추진 실적

-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책자 58만 부 제작 및 배송 완료(2018.5월)
 - 기존과 달리 학부모용, 학교보관용, 보건실 비치용 3종류로 제작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
 - ※ 학부모 배부용: 학부모 직접 청구 안내 등
 - ※ 학교(교직원) 보관용: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 안내 등
 - ※ 보건실 비치용: 학교안전사고로 보건실 방문시 후속조치 안내 등
 - 동일 자료 본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접근성 높임
- 학교안전 관련 행사 참여 및 안전교육·강의를 통해 학교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에 대한 안내를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업무 개선 TF 활동 완료
 - 추진기간: 2018.1.1.~7.30.(7개월)
 - TF 구성: 학교장, 교육청 담당자, 변호사, 교사, 학부모 등 43명
 - 연구분야: 보상업무 개선, 교직원 안전망 구축,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활성화, 재정건정선 향상
 - ※ 각 영역별 TF 결과 내용을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예정

□ 향후 추진 일정

- ' 18.12월: 법률 시행 30주년 기념행사 예정, 2019년 달력 제작
- 추후 SNS를 통한 공제제도 홍보 강화 예정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10.10.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안전공제제도 안내	63,000	63,000	59,500	31,611	31,611	50.2	50.2
공제회 사업 및 기관홍보	80,000	80,000	48,000	40,063	40,063	50.1	50.1
계	143,000	143,000	107,500	71,674	71,674	50.1	50.1

5 여행자공제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교육과정의 변화에 맞춰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공제자 및 공제가입자에 대한 두터운 보상을 실현하기 위함
- 여행자보험 가입 등에 대한 일선 학교 현장 행정업무 부담 경감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대상: 각급 학교, 교육청 및 관련 기관
- 방법: 여행자공제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정산·보상 업무 원스톱 플랫폼 구축

○ 기존실적

- 2017년: 2,016건 계약 체결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사업 홍보 강화	연중	4회
공제 상품 및 서비스 개선		수회

추진 실적

- 2018년 상반기(1월~9월) 계약 건수: 2,157건
- 신문 지면 광고 2회, 홍보 공문 2회 시행

○ 여행자공제 상품 및 서비스 개선

- 현재 운영 중인 여행자공제사업의 현장 적합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실제 여행자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교직원의 고충을 듣고 여행자공제사업 운영에 반영

□ 향후 추진 일정

- ' 18.10~12월: 연중 수시 청약 접수, 사고 보상 및 사업 홍보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보완 요구사항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스템 개편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10.10.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여행자공제	5,000	5,000	5,000	1,513	1,513	30.3	30.3
계	5,000	5,000	5,000	1,513	1,513	30.3	30.3

6 학교안전사고피해자 상담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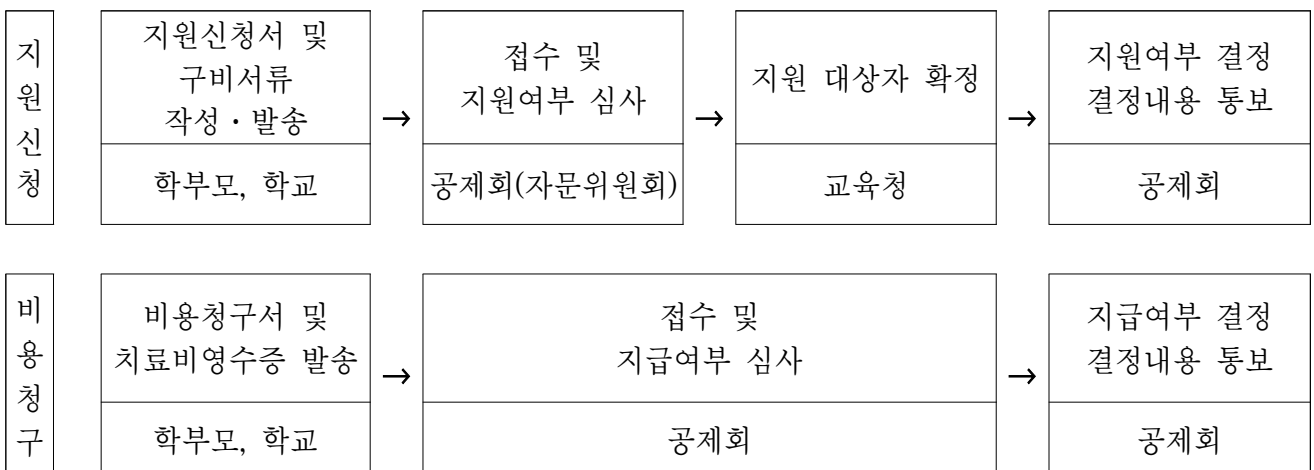
-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

○ 사업근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 사업내용

-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 방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기간의 연장 등 심의
- 신청절차



※ '지원 신청'에 대한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지원대상자 확정 결정 이후 '비용 청구'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자문위원회 개최 및 운영	연중	6회 개최
지원 신청에 따른 심의		매월 10건(예상)
상담지원 비용 지급 등 수행		"

추진 실적

- 자문위원회 개최 : 총 2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원신청에 따른 심의 : 총 6명의 지원신청자 중 4명 지원대상자로 선정
 - 지원신청, 기간연장신청 등에 대한 심의 진행
- 상담지원 비용 지급 : 총 1명 지원

구분	지원신청자	지원대상자	지원내역	
			건수	금액
2018년	6명	4명	1건(1명)	190,000원

향후 추진 일정

- ' 18.10~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현재까지는 지원 실적이 미미하지만 추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제도를 활성화 할 예정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10.10.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상담지원비	160,020	160,020	167,580	4,150	4,150	2.6	2.6
계	160,020	160,020	167,580	4,150	4,150	2.6	2.6

7

학교폭력피해지원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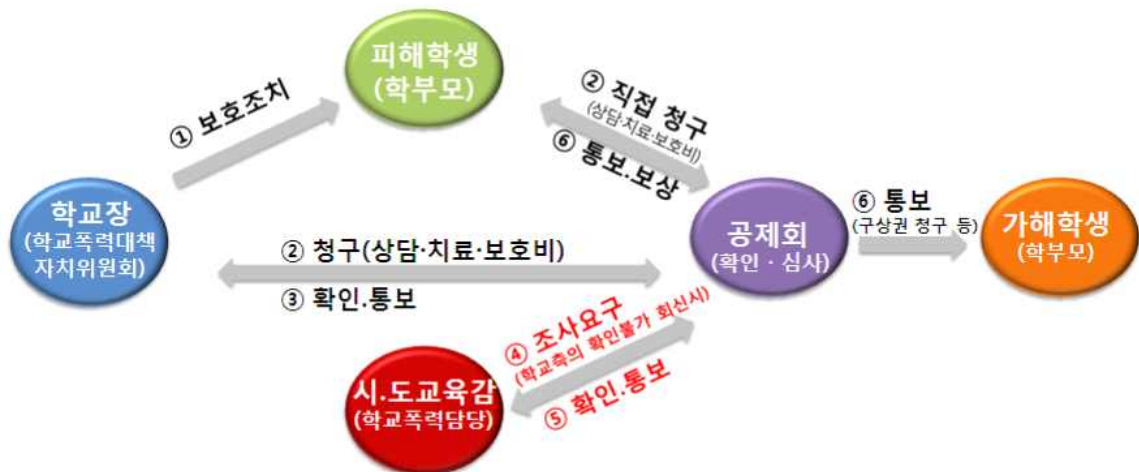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 가해자 등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에 기여함

○ 사업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3조(기금의 용도)

○ 사업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1호로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 가해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지급	연중	50건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비용 지급		50건
소송 등 구상 업무 수행		10회
법률 자문 수행		12회

추진 실적

-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 지급 : 75건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해 조치를 이행하는 비용 지원
- 구상 업무 및 법률 자문 업무 수행 : 75건
 - 피해학생에게 지원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이를 위한 법률 자문 의뢰
 - ※ 회수 완료 건수: 27건

향후 추진 일정

- ' 18.10~12월: 연중수시 접수, 심사 및 지급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18.10.10.현재)

사업명	2018년도		2017년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 (B)	지출액 (C)	원인행위액 (D=B/A)	지출액 (E=C/A)
학교폭력피해지원	120,460	120,460	120,460	74,458	74,458	61.8	61.8
계	120,460	120,460	120,460	74,458	74,458	61.8	61.8